대법원 2021도6357 상해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4. 5. 23.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함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이 이 사건과는 **별개의 형사사건에서 구속되거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

● 인천지방법원은 2020. 9. 9.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위 판결은 2021. 3. 11. 확정되었음

- 이 사건 공소가 2020. 12. 22. 제기되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음
- 피고인은 제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음

2. 소송의 경과

▣ 제1심 : 유죄(징역 3개월)

▣ 원심 : 파기자판(징역 3개월)

-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확정된 위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과 이 사건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제1심 및 원심의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함

3. 상고심의 주요 쟁점: 전원합의 쟁점

▣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 종전 대법원판결(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이하 '종래의 판례 법리')은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종래의 판례 법리처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4.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10인) ➠ 파기환송

(1) 법리의 선언

▣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구속'의 의미를 그 사전적 의미나 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정의 규정(제69조) 등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 상태'로 이해하면,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모두가 '구속'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 사건 조항도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함

- 다수의견의 해석은, 특별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등의 관련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 또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또는 분리되어 여러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피고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 구속과 별건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방어권이 제약되는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음

(2) 판례의 변경

▣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3) 이 사건의 결론

▣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 내지 형 집행 중에 있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함

▣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절차 등의 위법성을 감안하여,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

▣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나. 별개의견(3인,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함

▣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 형사소송법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구속 또한 특별히 그 의미를 달리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인 또는 구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조항이 명시적으로 구속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함
-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재판 실무에 따르더라도, 다른 사건 등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
- 오히려 종래의 판례 법리와 이에 따른 재판 실무는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해당 형사사건 사안

의 중대성이나 구금 상태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해당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개별적인 판단을 맡기고자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사법 정의의 실현 등을 위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음

-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조문을 목적론적 해석에 맞추어 정의하는 것은 입법을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음
- 특히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구속된 사람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함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 문언의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임

5.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하여 해석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면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를 포괄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였음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음**